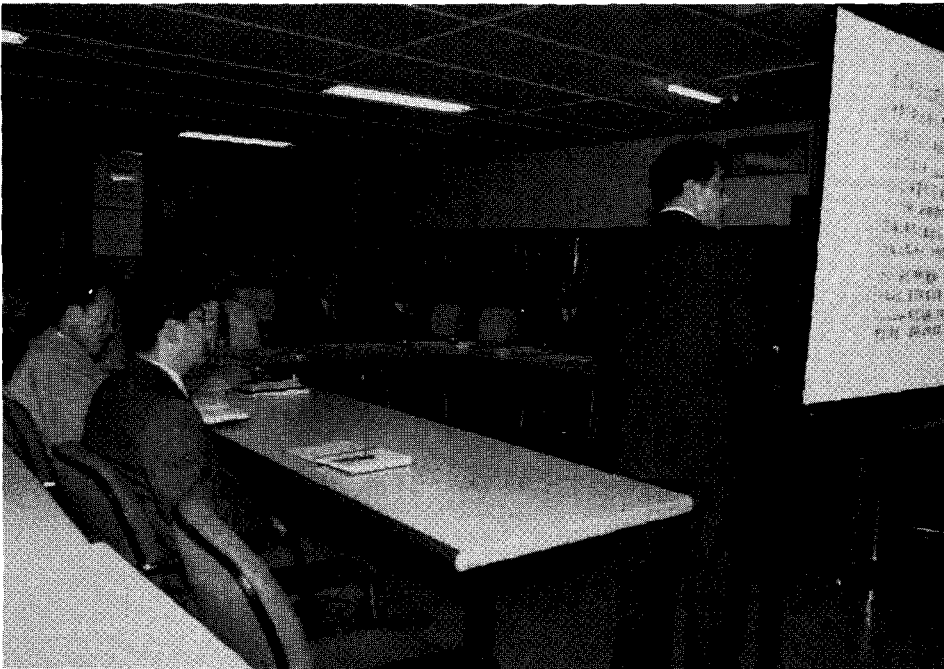


건설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에 따른 대한설비공사협회 의견



우리 협회 회장단 및 임직원들은 정부에서 마련한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대책」과 관련해 심도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비현실적인 부분에 대하여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1] 현장실명제도입과 하도급제도의 정비

(1)문제점

노무도급을 양성화할 경우 전문건설업자와 십장간의 관계는 도급에 의한 수급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나, 이 경우 십장의

계약이행보증과 하자보증 등 보증능력의 미비로 계약행위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현재 노무도급(모작) 십장 등은 자본금이 없어 담보를 제공할 능력이 없으며 담보를 요구할 경우 노무도급을 기피하고 있다.

또한 심장은 현장따라 이동하는 형태로 모작을 하고 있으므로 하자보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심장에게 현장근로자의 관리를 법적으로 허용할 경우 별도 단체 구성으로 인한 건설노임인상 주도 등 건설업계 노사분규의 발생이 가능하다.

과거 90년도에 일부 지역에서 지역노조를 결성하여 지역별 임금인상 주도, 해당지역에서만 기능인력 수급 요구, 마감공사시 태업에 의한 무리한 근로조건 등을 요구해 우리 업계에 커다란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다.

만약 심장 등에게 해당 기능공의 관리권을 법적으로 인정할 경우 위와 같은 지역별 노조의 발생이 가능하다.

노무도급에서 심장과 현장근로자는 대금의 수령 등에 있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고 있어 건설업법과 하도급법 등에서 이중적 보호의 필요성이 없으며 심장제도를 양성화할 경우 5인 미만 사업주 발생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이 제외될 뿐만 아니라 4천만원 미만 사업장의 발생으로 인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제외현상이 발생되어 현장근로자의 불이익이 발생한다.

심장 등은 무자격 소지자가 많으므로 부실시공과 재재하도

급시 심장 등을 제재할 방법이 없다.

일용근로형태, 공정에 따른 투입인력, 기능공의 구인란 등으로 인한 현장조직도 작성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현장비용도 증가된다.

(2) 협회의견

노임모작은 건설현장에서 필요에 의하여 자연 발생하는 변형된 임금지급형태이므로 심장 등을 중심으로 하는 기능인력 집단에게 도급·위탁 등에 의한 건설공사 시공권 및 인력관리권 부여는 불가하다.

현장실명제 도입시 지역별 건설노조 발생 등을 억제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전문건설업자가 노임모작 등 작업능률을 위한 능력급과 성과급 노임지급은 직영공사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

(보기) - 배관용접시 : 1개소 용접시 일정금액 지급

- 배관보온시 : 1m보온시 일정금액 지급

최종 근로자까지 보고하는 현장실명제는 기성금 수령시 현장근로자명단체출제도로 내용 보완이 필요하며 근로복지카드 도입시 병행 추진해야 한다.

[1] 전문건설업 겸업 허용 확대

(1)문제점

기술수준이 상이한 전문면허를 4~5개 중복보유를 허용할

경우 해당분야의 시공능력을 유지하기 어려우며 지입이사제 등 입찰만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발생한다.

다수의 전문업종을 보유할 경우 농지정리 등 토목공사에서 일반/전문간의 시공업역 구분이 모호하여 업역 분쟁 발생이 가능하다.

기술수준이 상이한 전문면허를 복수 취득시 시공기술능력의 부족으로 품질관리와 시공관리 등이 불가능하여 부실시공 발생이 우려된다.

(보기)

①설비, 상하수도, 철물 등의 면허에서 복수면허 허용시 : 시공기술에 따른 주된 기능인력이 용접공, 배관공 등이므로 시공기술능력의 유지가 용이하여 부실시공 방지

②설비, 철콘, 보링·그라우팅 등 면허에서 복수면허 허용시 : 시공기술의 주된 기술인력이 상이하여 시공기술능력의 유지가 어려워 부실시공 발생

(2)개선방안

현행제도(2개겸업 원칙)를 유지하면서 주된 전문공사에 연개공사인 경우 하도급공사에 한하여 부대공사 범위를 탄력적으로 규정화하는 등 부대공사의 범위를 확대한다.

부도 등으로 인하여 구성원의 중도탈퇴시 구성원의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하도록 책임

구분을 명확히 하도록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가 개정(95. 7. 10일자)됨에 따라 복합전문공정인 경우 각 분야별 전문업체를 공동도급하여 관리가 가능하도록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제도를 활용한다.

전문업종의 분류체계가 유사 시공기술능력별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 1개 전문공종 시공시 여러개의 면허가 필요하여 시공회사의 부담 과중 및 진입장벽이 초래되므로 전문업종의 분류체계를 유사기술별로 조정 이 필요하다.

(예) 설비공사인 경우 : 1개 아파트 현장 설비공사를 시공할 경우 설비면허(건물내 배관공사), 상·하수도 설비면허(단지내 배관상사) 필요

[3] 건설근로자 복지카드 도입

(1)문제점

① 고용보험료, 퇴직금의 지불 등 이중적 부담 발생

(보기) 노임공사금액이 1억 원인 경우

- 고용보험료 : 55만원
- 퇴직금 : 약 800만원

② 건설근로자복지카드 도입시 건설업자의 부담금을 1인/1일 당 1,000원으로 설정하여도 전문업체의 부담금의 과다로 경영 악화 요인 발생

(보기) 전문업체 연간 공사

실적 100억원인 경우 업체 부담금은 1억원임.

기능공의 일급이 5만원, 공제금이 1천원일 경우

$$\begin{aligned} \text{기능공총인원/년} &= 50\text{억원}(\text{직접노무비}) \div 5\text{만원} = 10\text{만명} \\ \text{업체총부담금} &= 1\text{천원/명} \times 10\text{만명} \\ &= 1\text{억원} \end{aligned}$$

(2)협회의견

고용보험료중 실업급여부분 퇴직적립과 근로복지카드 부담금의 이중부담이 배제되어야 하며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의 공사원가계산에 근로복지카드 부담금을 반영(직접노무비에 반영)하여 전문업체에 별도의 채용이 확보되어야 한다.

[4] 시공능력공시제 도입

(1)문제점

전문건설발주형태(소규모공사, 발주건수의 과다, 입찰참가자의 과다)에 비추어 시공능력공시제 적용에 따른 발주기관별 기준 차이에 따른 혼선 발생과 이로인한 민원발생이 가능하다.

시공능력공시제의 평가를 발주자의 자의적 판단에 맡길 경우 조달청과 대한주택공사 등 발주기관별로 같은 종류의 공사에 대하여 입찰참가기준의 상이한 현상이 발생되고, 하도급공사에 있어 원도급자가 시공능력공시제에 의하여 하도급자를 선정하지 않고 시공능력이 부족한 업체에게 공사를 시공하게 할 경우 부실시공 발생

이 가능하다.(부산 열차사고시 영세업체의 대형공사 하도급을 제한하기 위하여 도급한도액제를 보완한 바 있다.)

일부 발주기관에서는 민원 발생 소지를 우려하여 입찰참가기준에 시공능력공시제를 적용하지 않고 건설업 면허소지자로 자격을 확대할 경우 부실시공 발생이 우려된다.

특정지역업체의 낙찰을 유도하기 위한 과다 제한 발생이 가능하며 이에따른 집단적 민원 발생과 소송발생의 가능성이 우려된다.

시공능력공시제 실시를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며 전문건설공사중 공공공사의 원도급공사(93년도 70,000여건, 97년도 200,000건 추정)와 하도급공사에 시공능력공시제도를 활용할 규정이 필요하다.

(2)협회의견

국제개방제외대상공사금액(55억원 미만)공사에 대하여는 시공능력고시제도에 수수제한공사금액을 표기하고 전문건설공사에 한하여 능력공시제 실시준비를 위한 유예기간(3~4년)이 필요하다.

시공능력공시제도를 전문공사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필요하다.(국가계약법중제한경쟁입찰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의 하도급심사기준 등 개정 필요)